

Global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Kim, Kyoungrae*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human rights as content for global citizenship. The general notion of global citizenship defines it as a citizen's role and duty in the global society,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nation state. However, in relation to these obligations and roles, there is still criticism that the obligations and roles outside the national state are too limited and abstract in the reality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which is still centered on the nation state. This paper intends to materialize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s a concrete content of global citizenship. The concept of human rights has been continuously changed, and its concrete contents have been expanded as a reflection of the times. What is remarkable in this process is the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of human rights. In other words, the change of the concept of human rights, the contents of which have been so far focused on universality based on the specificity of human rights. At this level, we want to embody global citizenship based on the concept of human rights. To this end, this paper seeks specifically to clarify how the concept of human rights can shape global citizenship in the Republic of Korea vis-à-vis the Yemen refugee situation on Jeju Island.

Keywords: *Global citizenship, human rights, refugees,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E-mail: kimkr@kookmin.ac.kr

Ph. D. earned at: Doctor of political and Diplomacy, University of Berlin

Current position: Professor,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Kookmin University

Received: Dec. 15, 2018; Revised: Jan. 22, 2019; Accepted: Feb. 27, 2019

I . Introduction

The concept of citizen is a concept that is close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t sets out a baseline for establishing democracy through a constant effort to acquire freedom and rights as human beings. Citizenship is the concept spelling out the qualities shared by citizens in terms of their obligations and rights.

The concept of citizenship has traditionally developed around the nation-state. However, the problems that arise in today's globalized society can never be solved at the nation-state level. As the adequacy of nation-states to respond to human rights problems is challenged, discussions on the qualities of citizens living in the global community, that is, the citizens of the world, are continuously being raised. However, in reality, there is no world government, and therefore the meaning and effectiveness of this global citizenship can be questioned. Is it possible for global citizenship to deal with the global obligations and rights of people in the absence of a world government? Recently, the problem of refugees in Europe and Yemen refugees in the South Korean province of Jeju Island has raised the issue of whether global citizenship is possible.

Awareness of global citizenship signifies that the same human beings who, from one perspective, focus on the security issues and economic problems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live also have, from another perspective, freedoms and rights that extend beyond its boundaries. Refugees are the same humans who live contemporaneously in the community of the global village, but their freedom and rights as humans can only be protected by a national state. This reality shows the current status of awareness of global citizenship. When citizenship is understood as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in a democratic society, global citizenship is also the right and duty of the global citizen. Humans forced to live together in today's worldwide global village compressed by time and space clearly have rights and obligations within that global village beyond the boundaries of any one nation-state. These human rights form the premise and basis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global citizenship.

The European situation of the large number of refugees due to the mushrooming Syrian crisis in 2015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looking at the Yemen refugees who entered Jeju Island in 2018 are examples of the current state of awareness regarding global citizenship and the directions pointing us toward the cultivation of global citizenship. The refugee issue around the globe has become a measure of global citizenship in two ways. First, the impulse of other governments is often to try to prevent refugees from leaving the area in which they had been living, which would typically be the same nation state that was denying them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first place. Second, the ways in which refugees are treated in transit and/or at their chosen destination also often deny them basic human rights. In other words, those who are outside the boundaries of the nation-state can too easily find themselves in situations in which they cannot enjoy human rights.

This paper seeks to find the source of the refugee problem from human rights embodied in citizenship. Historically, human rights have been embodied through citizenship. But citizenship involves only the rights that members of the polity hold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state; no such rights are guaranteed to others who are not its members. Hence, the refugee problem arises because they do not have the right to have rights as embodied through citizenship.

In the end, global citizenship raises the need to break away from the concept of human rights embodied through citizenship. This can be found in the sense of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which is the right inherent to human beings rather than posited within a particular geographical entity.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is ultimately open, based on respect and recognition of others. When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is applied to refugees, the measure of global citizenship will have been improved.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at the cultivation of global citizenship can be found in the concept of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that the solution of the refugee problem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realization of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II. Global Citizenship, Refugees and Human Rights

IIa. The Background of Global Citizenship and the Limit of Discussions

The various problems associated with globalization such as terrorism, the tyranny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can never be solved at a nation-state level. The discussion of global citizenship can be found in the need for mankind to respond jointly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nation's stat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globalization. All human beings living on the earth need to actively work to solve problems with their identity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called the global village.

But global citizenship in this sense is by no means a recent argument, because it was already discussed by ancient Greek philosophers. When asked his origin, Diogenes replied that he was a global citizen. For Plato, "we are all relatives, friends and compatriots. It is not legal, but it is natural nature." Cicero pointed out that applying the right principles to his fellow citizens and not

to foreigners is to destroy the solidarity that binds mankind together (Suk Soo Kim 2004, 225).

One of the reasons why this discussion of global citizens or global citizenship has attracted attention again is the debate about patriotism and global citizenship within American academia in the mid-1990s. Martha Nussbaum then insisted that Americans should take part in solving common human problems as members of the human community, aside from their pride of American identity and citizenship (Nussbaum 2003). These discussions attracted attention for their contribution to the solution of problems caused by the compression of time and space through the explosion in information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means of communication – that is, by globalization – in the context of citizenship rights in the global community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nation-state – that is, global citizenship.

But it is also true that the dialogue about global citizenship has raised questions, particularly in two areas. First, the dialogue has revolved around such topics as the recognition of diversity, critical thinking, respect for others, consideration, and tolerance, which are arguably basic principles of general ethical virtue or fundamental tenets of democracy. What, then, is the specific content, meaning, and significance of global citizenship (Bae Young-ju 2013, 146)? Second, the very possibility of global citizenship has been questioned. The concept of citizens has evolved in tandem with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centered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nation. Therefore, the term citizen has historically been bounded by conceptions of qualification and duty tied to national sovereignty. In a world without world government or even the remote possibility of the construction of a world state, critics have argued that the concept of global citizenship is abstract and empty (Byeon Jong-hun 2006, 146).

Despite these criticisms, however, discussions on global citizenship are proceeding in various ways out of the necessity to solve global problems. The claim of the global citizenship, which recognizes the autonomy and specificity of the state, is not an abandonment of citizenship based on the state in the situation where the world government or the world state is not possible. These arguments, often rooted in Kant, predicate world citizenship on the basis of national or national sovereignty based on the association between nations around the world that are dedicated to republican values, rather tha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World Republic (Nah Jong-seok 2009; Appiah 2008).

In these efforts we see an attempt to establish a new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citizenship and global citizenship, in which global citizenship peels off the individual's responsibilities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global community (Israel 2012). However, it remains true that the more prominent the identity of the nation, the more distant will be the commitment to and consciousness of global citizenship. And devotion and love to mankind can still be criticized in a

realistic situation where it can conflict with love and dedication to the country in which it belongs.

Iib. Global Citizenship and Refugees

As the catchphrase *Homo migrans* implies, human history is the history of migration for a better life. With the deregulation and openness that can be called characteristic of globalization, capital and labor have widened the opportunity to move freely internationally.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there were 244 million immigrants worldwide in 2015, which is 3.3% of the world's population. The total had increased by 71 million since 2000, a 41% increase (UN DESA 2015, 1).

Table 1. Changes in the Number of Immigrants in the World, 1970-2015

Year	Number of Immigrants
1970	84,460,125
1975	90,368,010
1980	101,983,149
1985	113,206,691
1990	152,563,212
1995	160,801,752
2000	172,703,309
2005	191,269,100
2010	221,714,243
2015	243,700,236

Source: IOM. *World Migration Report 2018*. 15.

As Table 1 suggests, globalization has brought about an increase in immigration on a global level, though in a variety of contexts. People may choose to move their lives from the country in which they were born for economic reasons, for jobs on offer or as a distant but fervently desired prospect, or a wide spectrum of other motivations, including international marriage. Refugees fit

this profile to the extent that they are migrants moving their life base.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because refugees choose to move because they feel that they do not in fact have a choice: they feel that they cannot live their lives in security, often because they are or could be subject to persecution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war, or politics. In short, whether due to oppression or other reasons, they cannot be protected as citizens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had been based.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Refugee Agency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about 22.5 million people live in other countries for this reason (IOM 2018, 32).

If one compares attitudes during and after the Cold War, countries experiencing an influx of refugees moving from their homes to avoid persecution are typically taking a different stance toward the newcomers. During the Cold War, the presence of refugees was interpreted as a sign of the superiority of the system in the new host nation. For this reason, governments actively induced escape from countries in the opposite camp and made a show of actively accepting refugee applicants. However, the acceptance of refugees during the post-Cold War period is perceived as introducing instability in the host country. Humanitarian aid and public services to refugees are perceived as economic burdens, while the more that refugees enter a country, the more likely they are to change its demographic composition, especially if significant ethnic or other differences exist that can be used to distinguish the refugees. Also, refugee acceptance can lead to hostile acts or military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Posen 1996). Consequently refugees in the post-Cold War period have often been perceived as economic and security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ost country.

This attitude is unacceptable in the context of global citizenship, which views refugees as members of the global community demanding recognition rather than discrimination. Actions that demonstrate that certain people cannot be accepted as holding equal value with other humans due to having crossed boundaries of nation, state, race, religion, or any other “otherness” all fall short of global citizen performance. It is obligatory to protect refugees through the "Convention on the Status of Refugees" for war refugees of 1951 and the "Protocol on the Status of Refugees" of 1967, which eliminated the time and geographical restriction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on the Status of Refugees.* In addition, the UN Refugee Agency (UNHCR) is expanding the concept of

* The definition of refugees was first presented in the Convention on the Status of Refugees, which was adopted on July 28, 1951 and became effective on April 22, 1954. According to this document, events in Europe prior to January 1, 1951, and circumstances in other areas of the globe, created time and geographical restrictions on the granting of refugee status. However, the Protocol on the Status of Refugees, adopted on January 31, 1967, and effective on October 4, stated that the expression "a case before 1951" was deleted and applied without any regional restrictions. The Republic of Korea joined

refugees as set out in the Convention on Refugee Status and the Refugee Protocol, and acts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protect refugees. In addi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play a role in setting out the criteria for the rights and legal status of refugees under the international obligations agreed by the states (McAdam 2006, 14). Through these norms and legal structures, refugees have the right to equal treatment with the people of the receiving country.

In seeking the cause of this change in international norm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ransnational citizenship, Soysal (1994) interprets it as a symbol of the decrease in the influence of the nation. In the end, according to these discussions, the standard of citizenship, which was given mainly by the political community of the nation, was changed to a universal person, and the rights of migrants were guarante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international law.

As Soysal points out, international protection of refugees has certainly improved.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there are problems in receiving recognition as refugees in reality due to the politics, economy, and security of the host country. Acros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ny countries do not act on the basis of faithfulness to their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and there is a realistic limit without a surveillance system. In particular, the question of whether to recognize refugee status is a matter not of international norms, but of national sovereignty, since the host country can decide at its discretion how to balance its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with the standard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As can be seen in Europe, conflicts arise due to the problem of accepting refugees among their own people. Although the photo of Syrian refugee Alan Kurdi, who was only three years old, informed many people of the seriousness of the refugee problem, the Paris terrorism of the IS, which pretended to be a refugee action, led many to view refugee acceptance negatively.

In the end, the resolution of the refugee problem is inevitably required by the political will and determination of individual countries. Where can the political will and determination of individual countries eventually come from? In this respect, the core of the problem is the global citizenship of individual members of the country.

Iic. Global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The democratic political system is basically a rule by the people, and the political will and determination of individual countries to solve the refugee problem comes from the will and determination of its members. At this level, members of individual countries need to look at the

the Protocol on December 3, 1992.

refugee problem from the point of view of global citizenship. This means that refugees need to be viewed as colleagues with the same rights as living together in a global community, regardless of nationality, race, or religion. In the end, both individual hosts and refugees must recognize themselves as sharing equal rights – human rights – to live in the global village.

At this level, the premise of the Global Civilization for Refugees is human rights, which is defined as the right to have human rights because one is a human being. The human rights idea of the right to be human beings can be found in the ancient Greek and Roman natural law ideas. Natural law holds that nature, not the state, shapes all creatures, and insofar as humans follow natural principles they have natural rights. Because under natural law domination and obedience are not inher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bsolute and the creatures, they must all be treated as of equal value despite differences in ability (Cho Hyo-Je 2007, 51).

Today, however, the conceptualization of human rights springs from the Enlightenment (Ishay 2010, 43). Enlightenment thinkers emphasized human dignity, equality, and freedom out of their belief that human reason had to break the chains of Roman Catholicism and absolutist monarchy. Hobbes, Locke, and Rousseau saw human rights as being achieved through the political order, such as the state, in the sense that human reason and its rights could not be infringed by anyone. This new approach to political order aimed to insure the survival and freedom of its constituents through their own actions. These discussions, pushed along by a series of civil revolutions breaking down absolutism from the Glorious Revolution in Britain through the American War of Independence to the French Revolution, would find concrete institutionalization guaranteeing human rights in the form of citizenship in the "Declaration of Human and Citizen Rights" promulgated at the time of the French Revolution.

What this means is that human rights became concrete in the form of citizenship. Neither nature nor God guaranteed human rights; only through the civil revolution and in the form of citizenship could human rights be guaranteed. But those human rights were therefore restricted to individuals living within the limits of the power of the political order, and as a matter of history only to certain individuals, for example the bourgeoisie. In other words, the premise of citizenship that all citizens can ask the government to live humanly is the political system of the state, and the person who can have such rights, or those who can have citizenship, was limited.

After the era of civil revolutions,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meant that the content of citizenship and the number of people accorded rights have both expanded. However, the growth in people holding rights occurred within the political scope of the nation-state; those outside its boundaries were excluded. Hannah Arendt clearly describes the limitations or problems of guaranteeing human rights through citizenship based on the state. She presented her experience

with the contrast between human rights that should be applied to all members of the global village, regardless of nationality, race, religion, political opinion, or other aspects of personal identity, and the limitation of rights to individuals within the territory of a state. Arendt had been deprived of her German citizenship in 1937 by the totalitarian Nazi regime, and obtained American nationality in 1951; thus she had personal experience with the limitations of human rights guarantee through citizenship through her life for nearly a decade and a half as a stateless person.

Arendt was well aware that elements of political order such as government, constitution, and indeed the state itself are chosen by members, and therefore that its ultimate purpose is to maintain itself in order to realize the freedom of its members. The state should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its members through citizenship. However, refugees are forced to leave the country where they are born and raised because they have no guarantee that the state there will respect their human rights. Human rights are only an ideal abstraction for them. This situation is expressed by Arendt as “the loss of the right to have rights.” Only the people of the political organization of the state, that is, the citizens, can become citizens, and only then can the human rights be guaranteed, and refugees do not have the right to be guaranteed such rights. This means that as a human being, the right to pursue one's life, freedom, and happiness cannot be derived from the state (Arendt 2009, 501).

This discussion by Arendt reminds us that even if human beings are theoretically born free and equal, too often they lose their human rights from the moment they leave the citizenship of the country of their birth – the moment they lose their political community. Because human rights based on citizenship are the only rights available within a specific political community, refugees can be guaranteed human rights only if they are naturalized as members of a specific country or a new state.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shows the reality that they can have rights only as sovereignty and law of a specific country.

III. Reaction and Recognition of Refugees

IIIa. European Response

The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have been suffering from the refugee crisis caused by the Syrian civil war that began in 2011.

The extent of the crisis could be seen in the French elections of 2017, which saw the country suddenly reorganized into a new political order as the existing party system disintegrated and

power shifted to a new political party. The reasons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political order have been the public's rejection of established politics, anxiety caused by terrorist incidents, complaints about refugees and immigration policies, and economic problems. Although the newly elected president Emmanuel Macron had previously spoken positively about Germany's policy of embracing refugees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he now pursued anti-immigration policies, such as demolishing the largest immigrant temporary residence in Paris, restricting the period of receipt of refugee applications, and shortening the appeal period after denial of refugee status.

In 2018, Italian interior minister Mateo Salvini refused to permit a ship bearing 629 immigrants rescued by a French NGO in the Mediterranean near Libya to enter a port in Italy. The French President criticized the attitude of Italian refugees as cynical and irresponsible, but after meeting with Italian Prime Minister Giuseppe Conte a few days later, he joined his Italian colleague in stressing the need to strengthen control of refugees and illegal immigrants at the EU level (Gyeonghyang Newspaper 2018.06.19).

Compared to the leaders of other Western European countries,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had showed a tolerance for accepting refugees, but there have been changes in the German position as well. After a summit with the French President on June 19, 2018, Merkel officially announced her agreement to strengthening EU border security and blocking refugees in other EU member countries from entering Germany. This change in attitude was largely due to real-world politics in Germany. One of the factors leading to the failure to form a German government for nine months after the September 2017 general election was the refugee problem. This is because the Christian Social Union (CSU), the Bavarian party traditionally allied with Merkel's Christian Democratic Union (CDU), threatened not to participate in the coalition if Merkel continued implementing her preferred refugee policy. The entry into the federal parliament of the right-wing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 party, which had run on its opposition to Merkel's immigration and refugee policies, also placed constraints on the ability of the government to continue a policy of accommodating the refugees.

The reasons for the negative public opinion on refugees in each major European Union country may differ slightly due to variations in unemployment rates, economic growth, and social integration. But underneath have flowed common themes directly tied to people's lives, including anti-immigration, anti-refugee, and anti-Islam sentiments and fears of further acts of terrorism (Choi Jung-ae 2018, 7)

IIIb. Response to Yemeni Refugees in Jeju Island

The Republic of Korea joined the refugee agreement in December 1992 and was the first Asian country to implement the refugee law in July 2013. Since receiving the first refugee application in April 1994, the number of refugee applicants has reached 44,470 by the end of May 2018, of which only 839 have been recognized as refugees. Refugee recognition rate is extremely low at 4.1 percent.

Unlike the silence surrounding previous refugee applications, the issue of refugee acceptance suddenly emerged as a social issue in Korean society when 550 Yemeni refugees entered Jeju Island between January and May 2018 through the province's special Thirty-Day No Visa program to facilitate tourism. On June 13, 2018, a petition for changes in the Refugee Act to bar the entry of refugees considered unsatisfactory and the abolition or amendment of refugee application permits came to Korea's National Assembly via a petition to the country's president, who had made a campaign pledge to forward petitions indicating a wellspring of popular sentiment on any issue. More than 700,000 people signed the anti-refugee petition, the largest number of people ever to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 petition process. It became an ongoing social issue through four rallies against refugees.

The idea of accepting refugees is based on the responsibility and humanitarian level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those who oppose refugee acceptance have raised concerns that Yemen refugee applicants may cause economic, cultural problems and social unrest. They argue against accepting them because they feel that the applicants have come for jobs or terrorism, not as pure refugees. According to a poll, Korean society has a negative attitude toward accepting refugees as a whole, with a clear majority (56%) opposed to accepting the Jeju Island refugees from Yemen, only 24% in favor, and 20% saying they did not know (Jeong Han-wool 2018, 3). Opposition to refugees was more pronounced among women, younger people, Protestant believers or atheists, middle-class conservatives, and middle-class people in general. Reasons they cited or implied included the possibility of terrorism, increased crime rates, and racist prejudice (Jeong Han-ul 2018, 5-6). They feel that it is premature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receive refugee applications, and ask why they should come to South Korea, not the nearest European country, to apply for refugee status. Moreover, Yemen refugees have no ethnic ties to Korea, so why, it is asked, should they be accepted, especially when the social problems caused by refugees in Europe would now occur in Korean society. In the end, the issues facing Yemen refugees are considered irrelevant to Koreans politically, socially, and geographically, so they should keep their distance.

Four rallies in Seoul were held between June 30 and August 11, 2018. Rally claims included the charge that the so-called refugees were only illegal immigrants, and if the government

defended these “fake” refugees it would be ignoring the will of the Korean people. Some lawmakers participated in the rally to clarify their opposition to refugee acceptance. They claimed that their opposition stemmed from a desire to protect real refugees, not from racism, although they did not show any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in Yemen or explain what a real refugee might be. In the end, these lawmakers argued that the acceptance of refugees based on their national preference would cause social confusion within Korea by Islamic forces.

The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 (APRRN), which consists of 340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from 28 countries, issued a statement on the refugees in Jeju, arguing that opposition has been based on hostile, disgusting emotions toward foreigners in Korea, and by leveraging public fears promotes extremists' fake news and racial discrimination. Surrendering to hatred of foreigners in this situation would create a negative discourse about refugees, while proposals to abolish the refugee law would make the situation worse. They insisted on the necessity of active protection of Yemen refugees who entered Jeju Island.

IV.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Global Citizenship

Current attitudes toward refugees raise the question of whether there is a global citizenship. This is because human rights are based on citizenship centered on the state. Human rights are universal because they are human beings. However, citizenship is only for members of a specific country, not all human beings, because it is embodied through political institutions and institutions such as the state.

There are two key aspects to the fact that human rights are embodied through citizenship. The first is that the object of citizenship is limited in the country, but it is expanded with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The second is the content aspect of citizenship. This content aspect has been associated primarily with the work of T. H. Marshall. According to Marshall, citizenship has been expanded step by step from civic to political to social status. Civil rights (freedom of faith, property ownership, etc.) emerged in the 18th century, followed by political rights through participation in choosing rulers in the 19th century, culminating in social rights of economic welfare and security sought in the 20th.

Human rights have also been expanded in a timely manner because human rights have been embodied through citizenship. An ideology of human rights appeared in Europe in the 18th century, but its specific contents and objects expanded over time. The French jurist Karel Vasak classified human rights into three evolutionary categories. For Vasak, first generation human rights meant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at would include right to life, freedom of body, the protection of

law, and freedom from extralegal detention. Second-generation human rights referred to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rights to enjoy the social security system, to work, to rest, and to express one's culture. Third generation human rights included rights to share in economic development, a clean, whole environment, peace, human heritage,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ho Hyo-Je 2007, 116-119). The criteria for this division are based on the order in which their content have been recognized as germane to a discussion of human rights, and have been revised to accommodate newly emerging content.

Thus, human rights have been embodied in the form of citizenship, and those who have the right as human beings have also expanded, and the specific contents of rights have also expanded in the course of time. In other words, human rights are not fixed concepts, but new contents are added through historical development, which means that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does not depend on an a priori (Menke and Pollmann 2012, 101). At this level,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is always changing and reviving, which means that human rights are not always the same everywhere.

However, this discussion does not mean that human rights are relative. Growth in subject and content means that human rights are reinterpreted and added based on concrete, realistic conditions. That is,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should be understood as open rather than closed. At this level, universalism of human rights can be confirmed and realized through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of various cultures. In this respect, Jack Donnelly (2002) raises the need to understand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s a universalism that recognizes the possibility of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according to each culture.

In the end,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is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nd anti-absolutist dialogue based on recognition and respect for cultural differences. For this reason, Martha Nussbaum argues that adherence to universalist human rights claims involves a process of universalization through dialogue, rather than its implementation as an all-encompassing law. In principle this process of universalization and development cannot be concluded (Menke and Pollmann 2012, 110).

Hence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can be understood as an intention to constantly and repeatedly universalize in different cultures. According to this view,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cannot be carried out through any compulsory means unconditionally, and can be achieved by a rational means, a voluntary consent without force. Therefore,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through coercive methods such as the use of force is not in line with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only dialogue for tolerance and mutual understanding of heterogeneous culture and perspective can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This discussion of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provides a minimal view of how to look at the refugee problem today. In the same era, people living in the same global village, but those who are forced to escape from where they were born and lived by others, not by will, are also the starting point and premise of the world citizenship. These human rights are universal, but their universality is not a priori but historical. Therefore, the concept of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for multicultural coexistence based on inclusion of heterogeneous culture and pluralism should be premised on global citizenship. In the end, global citizenship is based on the recognition, respect, and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through dialogue in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areas.

V. Conclusion

Today,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about what the specific meaning of the virtues that members in the globalized global village should be for the citizens of the world. This paper sets out the preconditions of these debates in the concept of human rights, in particular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are universally held regardless of religion or nationality, but in reality human rights are guaranteed national boundaries in the form of citizenship. For that reason Arendt's focus on the problem of refugees stripped of the right to have rights is fundamental to any discussion about rights or global citizenship. Awareness of the refugee problem can be an opportunity to confirm the measure of global citizenship, and on the other hand, it suggests the direction that the cultivation of global citizenship must take.

The Republic of Korea also emphasizes human rights in order to cultivate global citizenship in public education. However, in looking at the issue of Yemen refugees in Jeju Island, it is also obvious that many Koreans are not sufficiently concerned about human rights shared by all human beings living in the same space in the same age.

Human rights should never depend only on guarantees by the nation state. It is a fundamental premise of global citizenship that human rights, which are the rights of all human beings, must be applied equally to refugees regardless of nationality, religion, or thought. Human rights should be expressed as concrete practices in which they are realized and manifested through universal respect, recognition and dialogue with others.

This paper sought to confirm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through refugees. The global citizenship of qualities and roles as a global citizen is ultimately based on human rights, which raises the need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human rights can be enjoyed as human beings regardless of nationality, religion, or political views. In the end, the premise for the cultivation of

global citizenship is in the cultivation of human rights, and in this respect the issue of refugees can be understood as an important measure for the cultivation of global citizenship.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Appiah, Kwame Anthony. 2008. *Cosmopolitanism: Ethics in a World of Strangers*. Translated by Practical Philosophy Study Group. Seoul: By Books.
- Arendt, Hannah. 2009.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Translated by Lee Jin-woo and Park Mi-ae. Paju: Hangilsa.
- Bae Young-ju. 2013. "The Roles of World Citizens and the Reconstruction of World Citizenship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4 (2): 145-167.
- Byeon Jong-heon. 2006. "The Possibility of Global Citizenship." *The Korean Ethics Education Association* 10: 139-161.
- Cho Hyo-Je. 2007. *Grammar of Human Rights*. Seoul: Humanitasbook.
- Choi Jeong-ae. 2018. "Background of the Rising German Far-Right Party: Focused on Euro-Skepticism, Migration Factor." *Oughtopia* 22 (1): 39-67.
- Donnelly, Jack. 2002.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anslated by Park Jung-won. Seoul: Oleum.
- Ishay, Micheline. 2010. *The History of Human Rights: From Ancient to the Globalization Era*, Translated by Cho Hyo-je. Seoul: Gil.
- Jeong Han-wool. 2018.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Korean Society on Yemeni Refugees." *Monthly Report Hankok Research*, July 2018.
- Kim Suk-soo. 2004. "Kant's World-Citizen-Community Thoughts in Contemporary World Civil Movements." *Kant-Studien* 14: 225-262.
- Marshall, Thomas Humphrey. 2014.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Translated by Cho Sung-eun. Seoul: Nanum-ui Jib.
- Menke, Christoph and Arnd Pollmann. 2012. *Philosophie der Menschenrechte zur Einfuhrung*. Translated by Jung Mi-ra and Ju Jung-lib. Paju: 21st Books.
- Na Jong-seok. 2009, "Variant Title Nationalism and Cosmopolitanism - Focusing on 'Liberal Nationalism.'" *Hegel-Studien* 26: 139-161.
- Nussbaum, Martha C. 2003. *For Love of Country?*. Edited by Joshua Cohen. Translated by Oh In-young. Seoul: Samin.

Non-Korean References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8. *World Migration Report 2018*. Geneva.
- Israel, C. Ronald. 2012. "What Does It Mean To Be a Global Citizen?" <https://www.kosmosjournal.org/article/what-does-it-mean-to-be-a-global-citizen/> *Kosmos* Spring/Summer 2012, updated 9 October 2018. Accessed 10 November 2018.
- McAdam, Jane. 2006. "The Refugee Convention as a Rights Blueprint for Persons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New Issues in Refugee Research Paper No. 125*. <https://www.unhcr.org/research/RESEARCH/44b7b7162.pdf>. Accessed 1 November 2018.
- Posen, Barry. 1996. "Military Responses to Refugee Disasters." *International Security* 21(1), 72-111.
- Soysal, Yasemin Nuhoglu. 1994. *Limits of Citizenship: Migrants and Postnational Membership in Europ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UN DESA. 2015.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http://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migration/publications/populationfacts/docs/MigrationPopFacts20154.pdf>. Accessed 10 November 2018.

세계시민성과 인권

김경래*

<국문요약>

본 논문은 세계시민성의 내용으로서 인권을 다루고 있다. 세계시민성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정의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벗어나 지구촌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 의무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 역할과 관련해 여전히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과연 국민국가를 벗어난 의무, 역할이 너무도 제한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세계시민성의 구체적 내용으로 인권의 개념을 중심으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인권 개념은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왔고 그 구체적 내용 또한 시대적 반영으로서 확대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다. 즉 인권 개념의 변화, 그 구체적 내용은 지금까지 인권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보편성을 지향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권의 개념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성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제주도의 예멘 난민 사태를 중심으로 인권의 개념이 세계시민성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세계시민성, 인권, 난민, 인권의 보편성, 인권의 상대성

*김경래(E-mail: kimkr@kookmin.ac.kr)

학위취득대학: 자유베를린 대학교 정치외교학 박사

현직: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논문 접수일: 2018년 12월 17일, 논문 수정일: 2019년 1월 22일, 게재 확정일: 2019년 2월 27일

I. 서론

시민이라는 개념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개념이다. 절대왕정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자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 즉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주체를 의미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시민성은 바로 이러한 시민들의 자질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시민이 갖추어야 할 의무 그리고 가진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민, 시민성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성립, 발전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화된 사회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결코 일국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다. 이에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인류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구촌이라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자질 즉 세계시민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계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세계시민성에 대한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세계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국가를 넘어선 세계와 인류에 대한 의무, 권리에 주목하는 세계시민성이 가능한 개념인지에 대한 의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유럽 그리고 제주 예멘 난민의 문제는 바로 세계시민성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난민 문제를 자국의 안보, 경제 등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바라봄으로 인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자유, 권리를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현실은 세계시민성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시민성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로 이해했을 때 세계시민성 또한 세계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라 할 수 있다. 시공간의 압축으로 표현되는 오늘날의 세계화된 지구촌이라는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은 분명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지구촌이라는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가 존재한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으로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권리와 의무라 할 수 있으며 인권은 바로 권리와 의무라는 동전의 양면으로 세계시민성의 전제이자 기초라 할 수 있다.

2015년 시리아 사태로 인해 대량으로 늘어난 난민 문제를 대하는 유럽의 모습 그리고 2018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현 모습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시민성에 대한 인식의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였으며 다른 한편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난민문제가 세계시민성의 척도를 보여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난민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난 지역을 타의에 의해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결코 일국적 차원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난민들을 대하는 모습 즉 난민들 또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국민국가의 경계를 벗어난 이들이 인간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논문은 그 주된 원인을 인권이 구체화된 시민권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인권은 시민권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시민권은 국가

라는 경계를 중심으로 그 구성원들만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그 구성원이 아닌 타인에게는 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즉 권리를 가질 권리를 갖지 못하는 문제는 바로 시민권을 중심으로 설정된 인권이기 때문이다.

결국 세계시민성은 시민권을 통해 구체화 된 인권의 개념을 탈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무엇보다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인 인권의 보편성이 갖는 의미에서 그 계기를 찾을 수 있다. 인권의 역사를 봤을 때 인권의 보편성은 결국 개방적인 것으로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기반으로 성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이 난민에게도 적용될 때 세계시민성의 척도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세계시민성의 함양은 결국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개념에서 찾을 수 있으며 난민 문제의 해결은 바로 이러한 인권 보편성의 구현을 위한 출발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II. 세계시민성과 난민 그리고 인권

IIa. 세계시민성의 등장 배경과 논의의 한계

세계화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 예를 들면 테러, 다국적 기업의 횡포, 환경 파괴 등의 문제는 결코 일국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다. 세계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바로 세계화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인류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가 지구촌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시민성은 결코 최근에 제기된 논의가 아니다. 이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논의들이기 때문이다. 디오게네스(Diogenes)는 자신의 출신을 묻는 말에 세계시민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플라톤(Plato)은 “... 우리 모두가 친척이며 친구이자 동포이다. 법률상으로는 그렇지 않으나 자연본성으로 그렇다...”라는 세계시민을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더불어 키케로(Cicero)는 자신의 동료 시민들에게는 올바른 원칙을 적용하면서 외국인에게 그렇지 못하겠다는 입장은 인류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연대를 파괴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김석수 2004, 225).

이러한 세계시민 또는 세계시민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된 배경 중 하나는 1990년대 중반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된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 논쟁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 미국인들에게 미국적 정체성, 시민권이라는 자만심에서 벗어나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할 것을 주장하였다(마사 누스바움 저·오인영 역 2003). 이러한 논의는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세계화로 야기되는 문제의 해결에 있어 국가의 경계를 벗어난 지구촌이라는 공동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성 즉 세계시민성으로 연결되어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었다. 즉 정보통신·교통수단의 비약적 발전으로 시공간적으로 압축된 하나의 생활세계인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의 갈등, 대립의 극복을 위한 방안

으로 세계시민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세계시민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비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첫째, 세계시민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 핵심적인 측면 중 하나는 다양성에 대한 인정, 비판적 사고, 타인에 대한 존중, 배려, 관용 등의 덕목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굳이 세계시민성이 아니라 일반적인 윤리적 덕목 또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내용들은 세계시민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구체성에 대한 의문 제기로 연결된다(배영주 2013, 146). 둘째, 세계시민성이 가능한가의 문제 제기다. 시민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국민국가라는 경계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주체로서의 의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이라는 단어에는 국가 주권의 주체로서의 자격과 의무라는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정부, 세계국가 건설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시민성이라는 개념은 공허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비판이다(변종헌 2006, 146).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성이라는 차원에서 세계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정부 또는 세계국가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를 바탕으로 한 시민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 국가의 자율성, 특수성을 인정하는 세계시민성의 주장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그 뿌리를 칸트(Kant)의 논의에서 찾고 있는데 세계공화국의 수립이 아니라 공화제에 기반을 둔 국가 간의 연합에 근거해 민족 또는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 세계시민성을 찾고자 하는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나종석 2009: 콰메 앤터니 에피아 2008).

이는 결국 국가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에서도 기본적으로 세계시민성을 정의할 때 자신이 세계 공동체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자신이 속한 세계 공동체의 가치 실현을 위해 기여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다(Ronald C. Israel 2010). 그러나 국가라는 경계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오늘날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세계시민성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인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자신의 국가에 대한 헌신, 사랑과 충돌할 수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IIb. 세계시민성과 난민

이주하는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t)라는 말이 있듯이 인류의 역사는 더 좋은 삶을 위한 이주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세계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탈규제, 개방으로 자본과 노동은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유엔 경제사회국(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5, 1)의 발표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세계적으로 2억 4천 4백만명의 이민자가 있는데 이는 세계 인구의 3.3%에 해당한다. 2000년과 비교했을 때 이 수치는 7천 1백만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41%의 증가율을 보인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화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이민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이민은 다양한 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일자리와 같은 경제적 활동, 국제결혼 등의 이유로 자신이 태어난 곳이 아닌 다른 국가로 자기 삶의 근거지를 옮기는 것이다. 이처럼 삶의 근거지를 옮긴다는 의미에서 난민 또한 이주에 포함된다. 그러나 난민은 인종, 종교, 전쟁, 정치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유로 삶의 근거지를 옮기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즉 자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억압 등의 이유로 기본권이 침해받거나 그 가능성이 있어 타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유엔난민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2016년 말 대략 2250만 명이 이러한 이유로 국경을 넘어 타국에서 살아가고 있다(IOM 2018, 32).

표1. 세계이민자수 변화

연도	이민자 수
1970	84,460,125
1975	90,368,010
1980	101,983,149
1985	113,206,691
1990	152,563,212
1995	160,801,752
2000	172,703,309
2005	191,269,100
2010	221,714,243
2015	243,700,236

출처: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IOM), 2018, 『WORLD MIGRATION REPORT 2018』, p. 15.

냉전 시기와 그 이후 자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타국으로 삶의 근거를 옮기는 난민들에 대해 난민 수용국들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냉전 시기 난민은 체제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징표였다. 즉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로의 이주 또는 그 반대되는 이주 모두 수용국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 때문에 상대진영으로부터 탈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난민 신청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탈냉전 시기 난민의 수용은 자국에 불안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즉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공공서비스는 난민 수용국의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 난민의 수가 증가할수록 자국의 인적 구성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난민 수용국 내부에 민족적 분열이 심각할 경우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난민의 이동으로 인해 주변국과의 적대적 행위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Barry Posen 1996). 즉 탈냉전 시기 난민은 수용국의 입장에서 경제, 안보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지구촌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의 출신 지역, 국가에 따라 차별 받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세계시민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다. 즉 민족, 국가, 인종, 종교 등과 같은 경계를 뛰어넘어 모두가 인간이라는 동등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태도는 세계시민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1951년 전쟁 난민을 위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그리고 이 협약에 제시된 시간적, 지리적 제약을 없앤 1967년의 ‘난민지위의정서’를 통해 난민의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다.¹ 또한 유엔난민기구(The UN Refugee Agency, UNHCR)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정서’에 제시된 난민의 개념을 확대하면서 국제기구로서 난민의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인권조약은 국가들이 동의한 국제적 의무로 난민의 권리와 법적 지위에 대한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Jane McAdam 2006, 14). 즉 이러한 규범, 법적 제도를 통해 난민들은 수용국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소이살(Soysal 1994)은 국제규범, 국제기구의 영향력, 초국가적 시민권에서 찾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을 국민국가의 영향력 감소로 해석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논의에 의하면 국민국가라는 정치공동체를 중심으로 부여되었던 시민권의 기준이 보편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국제인권규범, 국제법 등에 의해 이

¹ 1951년 7월 28일 채택되어 1954년 4월 22일 효력을 발생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난민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시간적으로는 1951년 1월 1일 이전에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 또는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표현은 시간적, 지리적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67년 1월 31일 채택되어 10월 4일 효력을 발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는 1951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표현이 삭제되었고 의정서의 당사국에 의하여 어떠한 지역적 제한 없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다.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3일 의정서에 가입하였다.

주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정당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이살(Soyosal)이 지적하듯이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는 분명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난민으로 인정을 받는 데 있어 수용국의 정치, 경제, 안보 등의 이유로 문제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즉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은 국제법적 의무에 대한 신의성실에 입각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감시제도가 없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제적 규범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국이 국제협약의 기준에 따라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맞게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주권의 문제이다.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국민들 사이에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문제로 인한 갈등 그리고 세 살밖에 안 된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난민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지만 난민을 가장한 IS의 파리테러는 난민수용 정책에 대한 찬반논쟁을 수용국 내에서 야기시키고 있다. 결국 난민 문제의 해결은 개별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개별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와 결단은 결국 어디에서 도출될 수 있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의 핵심은 개별 국가 구성원들의 세계시민성이라 할 수 있다.

IIc. 인권과 시민권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기본적으로 인민에 의한 통치이다. 따라서 난민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별 국가의 정치적 의지와 결단은 구성원들의 의지와 결단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차원에 개별 국가의 구성원들은 난민 문제를 세계시민성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곧 난민을 국적,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지구촌이라는 공동체에 함께 살아가는 자신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 동료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자신과 난민 모두 지구촌에 살아가는 동등한 권리 즉 인권을 가진 존재로 인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시민성의 전제는 바로 인권이다.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라는 인권 사상은 그 근원을 고대 그리스, 로마의 자연법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자연법은 국가가 아닌 자연이 모든 피조물에게 가르친 이치로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인간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권리 즉 자연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자연법은 절대자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로 피조물인 인간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평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조효제 2007, 51).

그러나 오늘날 인권 개념의 출발은 이론의 여지 없이 계몽주의에서 비롯되었다(미셸린 이샤이 저·조효제 역 2010, 43). 계몽주의자들은 신에 의한 질서가 아니라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인간의 존엄, 평등, 자유를 강조하면서 로마 가톨릭, 전제군주제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특히 홉스(Hobbes), 로크(Locke), 루소(Rousseau)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들은 인간의 이성과 그에 따른 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인간의 권리를 국가와 같은 정치 질

서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치질서는 구성원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으로 구성원의 생존과 자유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논의들이 시민혁명을 통해 제도화될 수 있었는데 프랑스 혁명 당시 발표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바로 그 구체적 예라 할 수 있다.

시민혁명은 절대주의를 무너뜨리고 계몽주의자들의 논의를 받아들여 헌법, 정부, 국가 등과 같은 정치 질서를 새롭게 만들었고 이 정치 질서에 근거해 시민권의 형태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예를 들어 영국은 명예혁명을 통해, 미국은 독립전쟁을 통해 건립한 새로운 국가를 통해, 프랑스는 프랑스혁명 이후 발표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통해 모든 인간은 권리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음을 명확히 하였고 법, 제도를 만들어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인간의 권리인 인권은 시민권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는 것이다. 즉 자연, 신 그 어느 것도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했지만, 시민혁명을 통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시민권의 형태로 인간의 권리가 보장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권리는 정치 질서의 힘이 미치는 범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그중에서도 특정한 사람들 즉 부르주아들의 권리만을 의미했다. 즉 시민권은 모든 시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는 그 전체가 바로 국가라는 정치제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러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즉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된 것으로 보편적 인간의 권리까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시민혁명 이후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시민권의 내용 그리고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확대는 국가라는 정치제도의 범위 내에서의 확대였고 그 경계를 벗어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까지 확대되지 못하였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이처럼 국가를 바탕으로 시민권을 통한 인권의 보장이 갖는 한계 또는 문제점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시민권을 통해 구체화된 인권이 국가라는 영토를 경계로 구성원들에게 제한적으로 보장됨으로 인해 국적, 종족, 종교, 정치적 견해 등에 상관없이 지구촌의 모든 구성원에 적용되어야 할 인권의 문제점을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제시하였다. 즉 전체주의 나치(Nazi)의 박해로 1937년 시민권이 박탈당하고 1951년 미국 국적을 얻게 된 그녀는 무국적자로서의 경험을 통해 시민권을 통한 인권의 보장이 갖는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정부, 헌법, 국가와 같은 정치질서는 구성원에 의해 선택된 것이며 따라서 최고의 목적은 구성원의 생존, 자유의 실현에 있다. 이를 위한 기본적인 것이 바로 시민권이다. 바로 국가는 그 구성원들의 인권을 시민권을 통해 보장하는 보장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난민은 국가에 의해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난 국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이들에게 인권은 하나의 이상적인 단어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을 아렌트는 ‘권리를 가질 권리의 상실’로 표현하고 있다. 국가라는 정치조직의 구성원 즉 국민만이 시민이 될 수 있으며 그럴 때에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난민들은 그러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가의 이익이

법보다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으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국가를 벗어난 인간은 그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 그 자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한나 아렌트 저·이진우·박미애 역 2009, 501).

아렌트(Arendt)의 이러한 논의는 인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가라는 정치공동체의 일원 즉 국민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인간의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의 국민이 되어야만 하는 현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자유롭게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태어난 인간이지만 그가 국가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즉 정치공동체를 상실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시민권을 바탕으로 한 인권은 어떤 특정한 정치공동체에 소속된 권리일 뿐인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난민들이 특정 국가의 구성원으로 귀화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국가를 세워야만 인간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권이라는 보편성은 실질적으로 특정 국가의 주권, 법으로서만 권리를 가질 권리를 가질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III 난민에 대한 반응과 인식

IIIa. 유럽의 반응

누가 2015년 시리아 내전을 계기로 유럽에 대규모의 난민이 유입으로 야기된 유럽 난민사태(the european migrant crisis)로 유럽연합 국가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2017년 프랑스 대선은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정당인 앙 마르슈(En Marche, 전진)의 마크롱(Macron)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정당의 몰락 신생 정당의 집권이라는 측면에서 프랑스가 새로운 정치 질서로 재편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의 원인으로 기성 정치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 테러 사건들로 인한 불안, 난민과 이민 정책에 대한 불만, 경제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비록 새로이 당선된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 전에 독일의 난민포용 정책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나 집권 후 파리에서 가장 큰 이민자 임시 거주촌 철거, 난민신청 접수 기간 그리고 난민 지위 거부 이후 이의제기 신청 기간을 단축하는 등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8년 이탈리아의 내무장관인 마테오 살비니(Matteo Salvini)는 6월 프랑스의 비정부기구(NGO)인 'SOS 지중해'가 리비아 해역에서 구조한 이민자 629명의 입항을 거부하면서 이탈리아가 더는 유럽의 난민 캠프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이러한 이탈리아의 난민에 대한 태도에 냉소적이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하였다. 그러나 며칠도 지나지 않아 주세페 콘테(Giuseppe Conte) 이탈리아 총리와 만나 EU 차원에서 난민과 불법이민 통제 강화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콘테 총리는 유럽으로 넘어오려는 난민들의 입국심사를 난민들의 출신국 현지에서 해야 한다며 EU가 나서서 이 문제를 논의하라고 촉구했다(경향신문 2018.06.19.).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난민수용에 있어 포용적 태도를 보였던 독일의 메르켈(Merkel) 총리 또한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6월 19일 프

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유럽연합 역외 국경 경비 강화, EU 회원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의 독일 입국 거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무엇보다 독일 국내의 현실정치에 기인한다. 2017년 9월 총선 뒤 9개월 동안 정부를 구성하지 못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난민 문제였다. 전통적으로 기민연(CDU)의 연정과 트너였던 기사당(CSU)이 메르켈 총리가 시행했던 기존의 난민 정책을 지속할 시 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에서 기존의 메르켈 총리의 이주민, 난민 정책에 부정적이었던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의 연방의회 진입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 정부 또한 기존의 난민 정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 국가마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의 원인은 약간씩 다를 수 있다. 높은 실업률, 낮은 경제성장률, 사회통합의 문제 등 주된 요인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반 이주민, 반난민, 반이슬람, 테러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배경을 공통으로 갖고 있다(최정애 2018, 7).

IIIb.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반응

앞에서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아시아 나라 가운데 처음으로 2013년 7월부터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다. 1994년 4월 처음 난민신청을 받은 이후 2018년 5월 말까지 난민신청자는 4만470명이다. 이들 중 2만361명에 대한 심사를 끝냈는데 839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난민 인정률이 4.1%로 극히 낮다. 인도적 체류 허가²를 받은 외국인도 심사 대상자의 7.6%인 1540명에 지나지 않는다(한겨레 2018.06.20)

그러나 이전의 난민신청과 달리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550여 명의 예멘 난민이 무사증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한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난민수용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2018년 6월 13일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이 청와대의 국민청원에 올라왔고 이에 대해 7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난민수용에 대한 반대에 서명을 하였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행된 이래 역대 최다인원이다. 더불어 4차에 걸친 난민 반대 집회 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화 되었다.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 인도주의적 차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수용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순수한 난민이 아닌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또 이들을 난민으로 수용함으로 인해 경제적, 문화적 문제와 사회적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난민수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² 대부분의 국가들은 난민 인정사유를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난민제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도 인도적 견지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난민협약국과 마찬가지로 '인도적 체류허가 제도를 보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권지윤 2018, 85.)

보였다. 즉 제주도 예멘 난민수용에 반대하는 입장 56%, 찬성하는 입장 24%, 모르겠다는 입장 20%로 전반적으로 반대의 견해가 많았다(정한울 2018, 3). 반대 견해는 여성일수록, 젊은 사람일수록, 개신교 신자 또는 무신론자, 중도 보수 및 중산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반대의 근거로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한 테러 가능성, 난민 신청자의 다수가 20~30대 남성으로 인해 범죄율이 높아질 것, 인종주의적 편견을 제시하였다(정한울 2018, 5-6).

이러한 반대의 근거는 앞에서 언급한 국민청원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즉 대한민국이 난민신청을 받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가까운 유럽이 아닌 대한민국에까지 와서 난민신청을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예멘에서 난민이 발생하게 된 것이 대한민국과는 그 어떤 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왜 이들을 수용해야 하는지 더불어 난민으로 인해 유럽 사회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예멘 난민의 발생은 정치, 사회적으로 대한민국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지리적으로도 상관없으므로 계속해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송영은 2018, 99).

2018년 6월 30일 서울에서 제1차 난민 반대집회가 열린 후 8월 11일까지 모두 4차례의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서 나온 주장들 또한 반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주 예멘 난민들은 난민이 아니라 불법 이민자로 정부가 이들 가짜 난민을 옹호하는 것을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집회에 참여해 난민 수용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도 하였다. 이들은 특히 인종차별이 아닌 진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했지만, 예멘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진짜 난민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서 단지 자국민 우선주의에 근거해 난민수용으로 이슬람 세력에 의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대한민국에서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28개국 340개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난민네트워크(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 APRRN)는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연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서는 대한민국에서 예멘 난민을 대하는 태도는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 정서에 근거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극단주의자들의 가짜 뉴스, 인종차별 유발, 난민에 대한 대중의 공포 조장 등의 상황에 대한 우려,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난민들과의 공존을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국민이 근거 없는 공포스러운 캠페인에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외국인 혐오 여론에 굴복하는 것은 오히려 난민에 대한 부정적 담론을 생성할 것이며 난민법 폐지와 같은 시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IV. 인권의 보편성 그리고 세계시민성

이러한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인 지구촌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인간이지만 인간으

로서의 자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난민들의 상황은 과연 세계시민성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무엇보다 인권이 국가를 중심으로 한 시민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보편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적인 권리가 시민권을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당위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권은 국가와 같은 정치기구, 제도를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아닌 특정한 국가의 구성원에게만 해당한다.

인권이 시민권을 통해 구체화되었다는 사실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측면이 있다. 첫째는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국가 내에서도 제한적이었으나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즉 시민혁명 이후 부르주아 세력에 제한되었던 시민권이 민주주의의 확대와 더불어 국가구성원 전체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시민권의 내용적 측면이다. 이러한 내용적 측면은 마샬(T. H. Marshall)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마샬에 의하면 시민권은 단계별로 확장되었다. 즉 시민권은 공민적, 정치적, 사회적 요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요소들은 단계별로 발전되었다는 것이다(토마스 험프리 마셜·톰 보토모어 저, 조성은 역 2014: 김운태 2013). 즉 18세기 신앙의 자유와 재산 소유권을 의미하는 공민적 시민권이 형성되었고, 19세기 정치참여의 권리가 확보되는 정치적 시민권 그리고 20세기 경제적 복지와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는 사회적 시민권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인권이 시민권을 통해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인권 또한 시기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인권의 이념은 분명 18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발현하였지만 시기적으로 구체적 내용 그리고 그 대상 또한 확장되어 왔다. 프랑크 법학자 바작(Karel Vasak)은 이러한 차원에서 인권의 내용을 3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구분에 의하면 생명, 신체의 자유, 법의 보호, 인신구속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1세대 인권,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권리, 일할 권리, 쉼 권리, 문화적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2세대 인권 그리고 경제발전권, 환경권, 평화권, 인류공동의 유산에 대한 소유권, 의사소통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3세대 인권으로 구분된다(조효제 2007, 116-119). 이러한 구분의 기준은 인권의 내용으로 인정되는 순서에 의한 것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에 의해 수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인권이 시민권의 형태로 구체화되면서 그 대상 즉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는 사람의 확대 그리고 권리의 구체적 내용이 또한 시간의 흐름속에서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결국 인권이라는 것이 선형적이고 초역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권은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 발전을 통해 새로운 내용이 첨가된 것으로 인권의 보편성은 선형적이며 초역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권의 보편성은 항상 변화하면서 새로워지는 동적이면서 진행적인 것이다(크리스토프 멩케·아른트 폴만 저, 정미라·주정립 역 2012, 101). 결국 인권은 어디에서나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인권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권이라는 권

리를 갖는 주체와 그 내용에 있어 확대는 결국 인권은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성을 바탕으로 재해석되고 첨가되는 것으로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개방적인 보편성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권의 보편주의는 다양한 문화들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통해 확인되고 실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넬리(J. Donnelly)는 인권의 보편성을 각 문화권에 따른 수정과 보완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보편주의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잭 도넬리 저』·박정원 역 2002, 74).

결국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절대화하지 않으면서 상호이해와 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너스봄(Martha Nussbaum)은 보편주의적 인권 주장을 고수하면서도 이를 모든 것을 포괄하는 법칙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직 대화를 통한 보편화의 과정만이 존재할 뿐이며 이 과정은 원칙적으로 종결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크리스토프 멩케·아르트 폴만 저, 정미라·주정립 역 2012, 110). 결국 인권의 보편성은 서로 다른 문화들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보편화를 이루기 위한 지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인권의 보편성은 무조건 어떤 강제 수단을 동원해 관철할 수 없는 것으로 합리적인 수단 즉 강제 없이 이루어지는 자발적 동의를 통한 보편화에 대한 기대 이상의 것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명목하게 무력 사용 등의 강압적 방법을 통한 인권의 실현은 인권의 보편성과 맞지 않는 것으로 이질적인 문화, 관점에 대한 관용과 상호이해를 위한 대화만이 인권의 관철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다(장은주 2010, 370).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 난민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최소한의 관점을 제공한다. 같은 시대, 같은 지구촌이라는 공간에서 살아가지만,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자신이 태어나서 생활하던 곳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또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세계시민성의 출발점이자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인권은 보편적이지만 그 보편성은 선협적인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질적 문화에 대한 포용,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한 다문화 공존을 위한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개념이 세계시민성에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권은 보편적이지만 그 보편성은 이질적인 것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바탕으로 한 개방적인 보편성이다. 결국 세계시민성이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역 등에서 이질적인 것에 대한 인정과 존중 그리고 대화를 통한 보편성을 추구를 그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오늘날 세계화된 지구촌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세계시민성이라 했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논쟁들에 앞선 것으로 즉 이러한 논의들의 전제가 바로 인권 특히 인권의 보편성이라

는 개념에서 찾고자 하였다.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인 인권은 종교, 국적 등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갖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권은 시민권의 형태로 국가를 경계를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렌트는 난민, 망명자들에 대해 권리를 가질 권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난민 문제에 대한 인식은 바로 세계시민성의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전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한민국 또한 공교육 차원에서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해 인권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제주 예멘 난민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 이들 또한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가져야 할 인권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인권은 결코 국민국가를 경계를 보장될 수만은 없는 것이다. 국적, 종교, 사상에 상관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인 인권을 난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세계시민성의 출발이자 전제이다.

인권은 분명 당위적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화된 사회에서 인권은 구체화된 실천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에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그 보편성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크다. 즉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존중과 인정 그리고 대화를 통해 만들어가는 개방적인 것이 바로 인권의 보편성이기 때문에 인권의 구현, 실현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을 난민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역할이라는 세계시민성은 결국 인권을 그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는 국적, 종교, 정치적 견해 등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결국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전제는 인권 함양에 있으며 난민 문제는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중요한 척도로 이해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밀려드는 난민 서로 떠넘기는 EU 국가들 ‘걸어잡고 보자’, in.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6182117005 (검색일 2018. 11.20).
- 권지윤, 2018, “한국 내 예멘 난민이슈에 대한 이해.” 『Muslim-Christian Encounter』 11(2), 81-112.
- 김석수, 2004, “칸트세계시민사상의 현대적 의의.” 『칸트연구』 14집, 225-262.
- 김윤태, 2013, “토마스 험프리 마셜의 시민권 이론의 재검토 - 사회권 정치 복지국가의 역동성.” 『담론201』 16(1), 5-32.
- 나종석, 2009,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헤겔연구』 26권, 169-197.
- 마사 너스봄 외 저, 오인영 역, 2003,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서울: 삼인.
- 미셸린 이사이 저·조효제 역, 2010, 『세계인권사상사』, 서울: 길.
- 박광형·전희진, 2017, “긴장의 원천인 시민권 - 시민권 담론의 다층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문화와 정치』 제4권 제2호, 111-140.
- 배영주, 2013, “세계시민의 역할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시민교육의 재구상.” 『교육과학연구』 제44집 2호, 145-167.
- 변중현, 2006, “세계시민성 관념과 지구적 시민성의 가능성.” 『윤리교육연구』 제10집, 139-161.
- 송영은, 2018, “무사증과 무관용의 사이 - 제주의 예멘난민 문제.” 『가톨릭 평론』 17, 97-104.
- 장은주, 2010, 『인권의 철학』, 서울: 새물결.
- 잭 도널리 저, 박정원 역, 2002, 『인권과 국제정치: 국제인권의 현실과 가능성 및 한계』, 서울: 오름.
- 정한울, 2018,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보고서. 예멘 난민에 대한 인식 격차 발생 요인 탐색.” 『여론속의 여론』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07.
- 조효제, 2007, 『인권의 문법』, 서울: 후마니타스.
- 최정애, 2018. “독일 극우정당 부상 배경 - 유로화, 이주민 요인을 중심으로.” Oughtopia 33(1), 39-67.
- 최현, 2008, 『인권』, 서울: 책세상.
- 콰메 앤터니 애피아 저, 실천철학연구회 역, 2008, 『세계시민주의』, 서울: 바이박스.
- 크리스토프 멩케·아르트 폴만 저, 정미라·주정립 역, 2012, 『인권철학입문』, 파주: 21세기 북스.
- 토마스 험프리 마셜·톰 보토모어 저, 조성은 역, 2014. 『시민권』, 서울: 나눔의집.
- 한겨레, “한국, 난민법 5년전 시행…난민 인정률은 4.1%뿐.” in.

<http://www.hani.co.kr/arti/PRINT/849797.html>(검색일 2018. 12.20)
한나 아렌트 저, 이진우·박미애 역, 2009, 『전체주의의 기원 I』, 파주: 한길사.

Non-Korean References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8. *World Migration Report 2018*.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Israel, C. Ronald. 2012. "What Does It Mean To Be a Global Citizen?" <https://www.kosmosjournal.org/article/what-does-it-mean-to-be-a-global-citizen/> *Kosmos* Spring/Summer 2012, updated 9 October 2018. Accessed 10 November 2018.
- McAdam, Jane. 2006. "The Refugee Convention as a Rights Blueprint for Persons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New Issues in Refugee Research Paper No. 125*. <https://www.unhcr.org/research/RESEARCH/44b7b7162.pdf>. Accessed 1 November 2018.
- Posen, Barry. 1996. "Military Responses to Refugee Disasters." *International Security* 21(1), 72-111.
- Soysal, Yasemin Nuhoglu. 1994. *Limits of Citizenship: Migrants and Postnational Membership in Europ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UN DESA. 2015.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http://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migration/publications/populationfacts/docs/MigrationPopFacts20154.pdf>. Accessed 10 November 2018.